

2. 「소득세법」

가. 금융소득 과세의 개선방안

(1) 현황

-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발생원천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의 8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소득세법」 제4조), 금융소득이라 함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총칭하는 개념임
- 이자소득은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 받는 이자를 의미하고, 배당소득은 지분투자에 대한 이익의 분배금을 의미함
- 금융상품⁴⁵⁾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자본이득 등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반면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서 과세하고 있음

(2) 문제점

(가) 금융소득 유형의 명확한 구분 곤란

- 현실적으로 금융소득을 이자나 배당 또는 양도차익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

45) 금융상품이란 일반적으로 현금이나 소유지분에 대한 증서 및 거래당사자에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계약을 총칭한 것임

- 금융 관련 소득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과세대상을 비과세대상으로, 비과세대상을 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종 금융상품 출현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며, 이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⁴⁶⁾
- 신종금융상품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의 해석이 엇갈린 단적인 예로 엔화스왑예금⁴⁷⁾, 골드뱅킹⁴⁸⁾ 사건이 있음

-
- 46) 채권 양도차익, 파생상품의 매매차익,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과 같은 자본이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아 비과세하고 있음
- 47) 2002년 출시된 엔화스왑예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파생상품인 선물환과 엔화예금을 결합한 절세상품으로 상당한 인기가 있었는데, 국세청은 2006년 선물환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대법원은 2011년 5월 13일 선물환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자본이익의 일종인 외환매매이익에 불과할 뿐 예금의 이자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어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두5257 판결)
- 48) 골드뱅킹은 은행이 순도와 중량이 보증된 금지금 또는 관련 금융상품을 고객에게 사고 파는 업무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좁게는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시세 및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금으로 고객의 계좌에 적립한 후 고객이 출금을 요청하면 국제 금시세와 환율에 따라 환산한 원화로 출금하거나 금 실물을 지급해 주는 제도를 의미함. 골드뱅킹은 2003년 11월경 국내에 처음 비과세상품으로 출시되어 인기를 끌었는데, 기획재정부는 2010년 11월경 골드뱅킹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상 파생결합증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골드뱅킹으로 인한 수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음. 이에 은행들은 조세심판원에 배당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을 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년 6월 27일 골드뱅킹의 운영방법이나 손익의 계산방법 및 분배방법이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여 처분청이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음(조심 2012전361, 2012. 6. 27.)

(나) 금융상품 간 과세형평성 결여

- 경제적 실질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다른 금융상품으로 분류되어 세제상 다른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음
-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파생결합상품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함(「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5항,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 추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ies, 이하 ‘ELS’라 함)⁴⁹⁾과 유사한 금융상품으로는 추가연계펀드(Equity Linked Fund, 이하 ‘ELF’라 함)⁵⁰⁾, 추가연계신탁(Equity Linked Trust, 이하 ‘ELT’라 함)⁵¹⁾, ELS의 수익구조를 복제하는 특정금전신탁, 그리고 금융공학펀드(Reverse Convertible Fund, 이하 ‘RCF’라 함)⁵²⁾ 등이 있는데, 각 금융상품 간 과세대상이 상이하여 금융상품 간 과세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음([표 5] 참조)
 - 파생결합증권⁵³⁾은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손익

49) ELS는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 지수 등에 연동하여 만기 수익이 결정되는 신종 유가증권으로 증권회사가 발행하여 판매하는 금융투자상품임

50) ELF란 파생상품펀드의 일종으로, 투자신탁회사들이 ELS 상품을 펀드에 편입하거나 자체적으로 ‘원금보존 추구형’ 펀드를 구성해 판매하는 형태의 상품임

51) ELT는 증권사와 은행, 보험사 등이 증권사에서 발행한 ELS를 편입해 만든 특정금전신탁 상품으로 ELS보다 안정성이 높음

52) RCF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산출된 목표수익 구조를 사전에 제시하고 금융공학 기법으로 운용하는 펀드임

53)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 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의미함(「자본시장법」 제4조제7항)

을 통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함

- 반면, 파생결합증권의 수익구조를 복제하는 펀드나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것보다 세제상 유리함

[표 5] 주가연계증권(ELS)과 유사한 금융상품의 과세 비교

투자상품	주가연계증권 (ELS)	주가연계펀드 (ELF)	주가연계신탁 (ELT)	ELS 수익을 복제하는 특정금전신탁	금융공학펀드 (RCF 등)
법적 형태	파생결합증권	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특정금전신탁	집합투자기구
주 투자대상	채권, 파생상품 (선물, 옵션)	ELS, 채권	ELS	채권, 옵션	주식,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
발생 소득	채권 이자, 채권양도차익, 파생상품 양도차익	ELS의 소득, 채권 이자, 채권양도차익	ELS의 소득	채권 이자, 채권양도차익, 파생상품 양도차익	배당, 주식양도차익,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대상	모든 손익을 통산	모든 손익을 통산	ELS의 소득	채권이자	배당
세목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종합과세	종합과세	종합과세	종합과세	종합과세	종합과세

자료: 이상엽, 「금융상품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재정포럼』 제203호, 2013, p.16.

(3) 개선방안

(가)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의 도입⁵⁴⁾

- 금융소득 유형의 명확한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세의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일단 금융자산 양도차익(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본이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안 등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위에서 ‘금융투자소득’이란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⁵⁵⁾가 아닌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및 저축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일컫는 것으로, 세법상 금융투자소득은 현행 세법상의 금융소득보다 더 넓은 개념임
- 다만,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므로 현행 과세체계 하에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현행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대주주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당장 소액

54) 홍범교·이상엽,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pp.44~47.

55)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 등’이라 함)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함)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함)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함(「자본시장법」 제3조제1항)

주주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기보다는 소액주주의 범위를 축소하고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

(나) 금융상품 간 과세형평성 제고

-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면 다른 금융상품으로 분류되더라도 세제상 유사하게 취급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반면 그것이 내장된 금융투자상품(ELS, ELF, ELT, ELS 수익을 복제하는 특정금전신탁, RCF)에 대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금융상품 간 과세형평성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⁵⁶⁾ 파생상품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또는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⁵⁷⁾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칙에 충실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양도소득세 도입 후 거래량이 감소한다면 세수가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음
 -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⁵⁸⁾은 투기적 거래를 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거래세 부과로 인하여 세수가 증대된다는 견해와

56) 손영철, 「파생상품이 내장된 금융투자상품 과세제도 연구」, 한국거래소, 2011, p.8.
 57)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과세방안과 관련하여 거래세 방식보다는 양도소득세 방식의 과세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의 의견임
 58)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파생상품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금융상품 간 형평성이 훼손되고 차익거래 감소로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세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음. 한국거래소 등 이해관계자들은 거래세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임

거래가 급감하여 오히려 세수가 감소한다는 견해가 대립함

- 참고로, 국제적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자본이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거래세를 부과하는 사례는 대만이 유일한 것으로 파악됨⁵⁹⁾. 또한 거래세를 도입했던 국가들도 시장위축으로 인해 거래세를 폐지한 사례가 있음⁶⁰⁾

(4) 입법 논의 현황

- 2014년 7월 말 현재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금융투자상품 과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현황은 다음과 같음

59)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영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2012, p.6.

60) 대만의 경우 거래세 부과 이후 지속적으로 세율을 인하하였음에도 외국인 거래량 비중이 우리나라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2011년 9.5%)임

- 스웨덴: 1984년 선물옵션 등에 거래세 부과 후 거래가 해외로 유출되어 1992년에 거래세 폐지
- 인도: 2008년 파생상품 거래세를 신설한 후 시장위축 우려로 실제 부과하지 못하고 2009년 7월 폐지
- 일본: 1998년까지 주식 0.3%, 선물 0.001%, 옵션 0.01%로 거래세를 과세, 1999년부터 자본이득세로 전환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앞의 검토보고, p.6.)

[표 6] 「소득세법」 및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발의 현황

구분	의안번호 (제안일)	대표발의 (제출)	내 용	심사 현황
소득 세 법	1901680 (2012. 9.10.)	설훈	• 주식양도차익과세의 기준이 되는 주식소유 비율과 주식가액 기준을 하향 조정 ¹⁾	대안반영폐기 (수정반영)
	1901883 (2012. 9.20.)	박원석	• 상장주식 대주주의 기준을 하향 조정 ²⁾	대안반영폐기 (수정반영)
	1903619 (2013. 2. 5.)	박원석	•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일반세율 (6~38%) 적용 ³⁾	상임위계류 (소위계류)
	1905144 (2013. 5.28.)	김재연	• 금, 은 등 금속, 보석류 등에 과세할 근거 마련	상임위계류 (소위계류)
	1906500 (2013. 8.23.)	정성호	• 대주주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확대 ⁴⁾	상임위계류 (소위계류)
	1907698 (2013.11.11.)	나성린	•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포함 등	상임위계류 (소위계류)
	1907751 (2013.11.14.)	홍종학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서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이익 제외 •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과 금지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 등	상임위계류 (소위계류)
증 권 거 래 세 법	1900726 (2012. 7.17.)	진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에 대하여 증권 등 거래세를 부과하도록 함 ⁵⁾	상임위계류 (소위계류)
	1901682 (2012. 9.10.)	설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에 대하여 증권 등 거래세를 부과하도록 함 ⁶⁾	상임위계류 (소위계류)
	1902079 (2012. 9.28.)	정부	•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 근거 및 세율 신설 ⁷⁾	상임위계류 (소위계류)

주: 1) 특정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1,000분의 20(코스닥상장법인 등은 1,000분의 30) 이상 소유한 주주와 소유하고 있는 특정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시가총액이 50억 원(코스닥상장법인 등은 30억원) 이상인 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자는 내용임

- 2) 상장주식 대주주의 기준이 지분율 3% 이상,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상장주식 대주주의 기준을 지분율 1% 이상(코스닥 상장주식은 2% 이상),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자는 내용임
- 3)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되, 보유기간 1년 미만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누진세율의 최고세율보다 높은 40%의 세율로 과세하자는 내용임
- 4) 상장주식 대주주의 기준을 주식 등의 합계액 1% 또는 시가총액 30억원 이상 소유(코스닥의 경우 주식 등의 합계액 3%, 시가총액 20억원 이상)한 자로 하향조정하자는 내용임
- 5) 파생상품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에 대한 증권 등 거래세 기본세율을 각각 1만분의 1, 1천분의 5로 하자는 내용임
- 6) 파생상품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에 대한 증권 등 거래세 기본세율을 각각 1만분의 1, 1천분의 7로 하자는 내용임
- 7)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 등 거래세 기본세율을 1만분의 1로 하자는 내용임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토대로 저자 작성

나. 거주자 판정기준의 개선방안

(1) 현 황

-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개인’이며, 개인은 ① 거주자, ②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나누어짐(「소득세법」 제2조제1항)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해당 납세자에 대한 과세권의 행사 여부가 결정되므로, 특정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이 달라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서 ‘거주자’의 의미에 대하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라고 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주소’에 대하여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